

建築士를 위한 設備講座

改正 消防法 解説

李 承 九 – 중앙소방설비(주) 대표(본회설비분과위원회위원)

現代 經濟의 急成長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기계공학, 화공학, 전기공학 등의 눈부신 변화를 가져 왔으며 보다 넓어지고 빨라진 인간들의 행동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건축공학의 발전은 건물의 대형화와 더불어 가능적인 면과 안전에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

構造的(Building construction) 인 욕구에 의하여 現代 建物의 대부분이 耐火構造로 建築되며,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의 설정이나 비상 계단의 설치 등은 화재의 위험을 감소 시키게 되고 또한 발전된 消防工學(Fire protection engineering)은 화재진압(Fire fighting)에서 예방(Fire prevention)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날로 새로워지는 消防技術은 消防法의 改正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관례당국에서 수개월을 연구 검토한 결과 법률 제3413호(81. 4. 4) 소방법의 개정 대통령령 제10619호(81. 11. 6)로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무부령 제374호(82. 6. 5)로 소방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一次的인 完成을 보게 되었다.

本 改正된 消防法에 대하여 適正 여부나 技術의in 검토를 論하기 보다는 建築人으로서의 理解와 필요한 점만을 記述하고자 한다.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전축업무상 불필요한 사항과 구법조문을 생략하기로 한다)

1. 特 徵

ㄱ. 消防施設의 緩和

消防施設은 人命과 財產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항시 건물주에게 이익을 초래하게 하지 않으면 화재의 발생이 없을 때에는 사용치 않을뿐만 아니라 매년 수리비가 요구되는 실정임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가 내화구조로 됨에 따라 화재 발생 요인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2배내지 3배 완화 실시하고 있다.

ㄴ. 罰則의 強化

소방법위반 사항에 대한 벌과금 규정을 종래의 10만원을 100만원으로, 5만원을 50만원으로, 3만원을 30만원으로 하는 등 강화하였다.

ㄷ. 소방 대상물의 구분

소방 대상물의 구분을 별표 1의 1항에서 20항으로 세분 하던 것을 1종장소, 2종장소, 3종장소 및 지정문화재·지하가·복합 건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은 화재하중(火災荷重)을 고려하여 제반소방시설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 또한 학교·여관 등의 호칭으로 하여 일반인들의 이해가 쉽게 한 것이다.

ㄹ. 구법과 동시 사용하여야 한다.

現 消防法 施行令이나 施行規則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물만을 정하였으며, 제반 기술적인 규정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및 위험률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은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별도 제정되어 시행할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함으로 구법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방법 개정사항중 주요내용

제 9조 (建築許可 등의 同意) ① 建築物의 新築·增築·改築·移転·대수선 및 構造 또는 用途變更의 許可 (建築法 第8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规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確認의 權限을 가진 行政府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者는 그 許可 또는 確認에 있어서 미리 당해 建築物의 工事施工地 또는 所在地를 管轄하는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許可 또는 確認을 할 수 없다. <改正 81. 4. 4 法3413>

④ 第1項의 规定에 의한 確認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는 第32條第3項의 规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함으로써 同意에 갈음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完工検査畢證을 確認하여야 한다. <新設 81. 4. 4 法3413>

① () 부분이 삽입됨으로 건축허가시의 동의 범위가 추가되었으며
④ 구법에는 소방시설의 완공 검사규정이 없었으나 신법에는 추가함으로 법적근거가 확립됨.

제11조 (共同防火管理) ① 高層建築物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消防對象物로서 그 管理의 權原이 分離되어 있는 것. 또는 地下街 (地下의 工作物안에 設置된 店鋪·事務室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로서 連續하여 地下道에 面하여 設置된 것과 당해 地下道를 合한 것을 말한다.)로써 그 管理의 權原이 分離된 것 중에서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指定하는 것에 대한 管理의 權原이 있는 者는 第10條 第2項의 规定에 의한 消防計劃의 作成 기타 防火管理上 必要한 事項을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改正 81. 4. 4 法3413>

① 구법에는 15미터이었으나 31미터로 공동방화관리의 의무 건축물을 대폭 완화

제12조 (特殊場所의 防炎) ① 高層建築物 (共同住宅을 제외한다) 劇場·카바레·호텔·病院 等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정하는 消防對象物에서 使用하는 카텐·실내장식물·전시용合板 기타 이와 類似한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은 防炎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크라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設置된 消防對象物에서 使用하는 物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但書新設 81. 4. 4 法3413>

① 방염 대상물중 학교·공동주택·시장·공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가 제외되었으며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소방 대상을 제외함으로 대폭 완화됨.

제29조 (特殊場所 등의 消防施設) ① 特殊場所의 関係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火設備·警報設備·避難設備·消防用水設備 기타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内務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81. 4. 4 法3413>

① 소방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이 용이하게 됨.

제29조의 2 (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第29條 第 1 項의 消防施設의 基準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内務部令의 變更으로 그 基準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特殊場所 (建築物의 新築·增築·改築·移転·大修繕등의 工事중인 特殊場所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基準을 적용한다. <本條신설 81. 4. 4 法3413>

소방법 개정에 따른 빈번한 시설 변경을 방지하기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허가를 통하여 공사중인 건물도 해당된다.

제32조 (消防施設의 施工申告등) ① 第16條第 1 項 및 第29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消防施設의 種類·施工場所 기타 必要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者는 内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検査結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적합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完工検査畢證을交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81. 4. 4 法3413>

① 소방시설의 시공을 할 때는 10일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또 완공시에도 검사후 필증을 교부 받아 건축 준공검사에 임하게 된다. 소방업자의 임무지만 감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78조 (罰則) 第10條 第 3 項·第15條 第 3 項·第18條 第 5 項 또는 第32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惰慢히 하거나 第32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完工検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5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拘留에 处한다. <改正 81. 4. 4 法3413>

제32조제 1 항에 의한 신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의 벌칙이다.

3. 소방법 시행령 중 주요내용

제 2 조(定義) 이 令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바닥面積”이라 함은 建築法施行令 第 3 條 第 1 項 第 3 号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面積을 말한다.
2. “延面積”이라 함은 建築法施行令 第 3 條 第 1 項 第 4 号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面積을 말한다.
3. “地下層”이라 함은 建築法 第 2 條 第 5 号의 規定에 의한 地下層을 말한다.
4. “無窓層”이라 함은 地上層中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避難 또는 消火活動을 함에 있어 有効한 開口部가 없는 層을 말한다.
5. “避難層”이라 함은 直接 地上에 통하는 出入口가 있는 層을 말한다.
6. “主要構造部”라 함은 建築法 第 2 條 第 7 号의 規定에 依한 主要構造部를 말한다.
7. “耐火構造”라 함은 建築法 第 2 條 第 9 号의 規定에 依한 耐火構造를 말한다.
8. “防火構造”라 함은 建築法 第 2 條 第 10 号의 規定에 依한 防火構造를 말한다.
9. “不燃材料”라 함은 建築法 第 2 條 第 11 号의 規定에 依한 不燃材料를 말한다.
10. “準不燃材料”라 함은 建築法施行令 第 2 條 第 9 号의 規定에 의한 準不燃材料를 말한다.
11. “難燃材料”라 함은 建築法施行令 第 2 條 第 10 号의 規定에 의한 難燃材料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를 건축법에 위임함으로 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해석상의 통일을 기한 것이다.

제 4 조 (建築許可等의 同意對象物의 範囲) ① 法 第 9 條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等의 同意對象物의 範囲는 建築法 第 5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建築物中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것으로 한다.

1. 別表 1의 特殊場所中 다음의 場所
 - 가. 公演場·競技場·集会場·飲食場·유기장·旅館호텔·旅人宿·寄宿舍·醫療院·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心神障礙者 福祉施設·유치원 및 地下街로서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 層의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나. 市場·4層以上 共同住宅·停車場·待合室·学校学芸展示館·公衆沐浴場·工場·映画 및 텔리비전 촬영소·倉庫·車庫 및 駐車場으로서 延面積 1천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 層의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다. 教會·寺刹 및 事業場으로서 延面積 1천 8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경우에는 그 層의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라. 비행기 格納庫

① 同意 대상물이 대폭 완화 되었다.

3층이하의 공동주택이 제외되었으며 가 항의 경우 2 배, 나 항의 경우 5 배 정도 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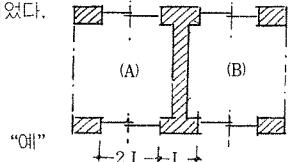
제14조 (消防對象物의 完全区劃区分) 耐火構造의 消防對象物로서 開口部가 없는 耐火構造의 바닥 또는 壁으로 区劃되어 있는 部分은 이 章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각各 別個의 消防對象物로 본다.

※ 구법참조

제13조 (消防対象物의 完全区劃区分) 耐火構造의 消防対象物로서 開口部가 없는 바닥 또는 壁으로 区劃되어 있고 그 区劃된 以外의 場所로 延焼할 우려가 없는 부분은 이 節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각各 別個의 消防対象物로 본다.

구법에는 완전 구획되었으며 인접된 장소로 延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하면 별동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구법에서는 1개의 건물이나 신법에서는 (A)(B) 건물로 간주한다.



제15조 (消防対象物의 用途別區分) 別表 1의 複合 建築物은 이 章(第21條 및 第22條를 除外한다)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用途別로 각各 1個의 消防対象物로 본다. 다만, 다음 각号의 消防対象物은 除外한다.

1. 延面積 1천 평방미터 以上인 建築物
2.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의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

대형건물은 주요용도로 준한다고 사료되나 소방기술상으로는 적용이 곤란한 항목이다.

제16조 (地下街의 摘制) 別表 1의 第1種場所 (老人福祉施設・児童福祉施設・心神障碍者福祉施設・유치원 및 공중목욕장을 除外한다)의 地下層이 地下街와 連結되어 있는 경우 当該 地下層의 부분은 이 章의 消防施設 (消防器具를 除外한다)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를 地下街로 본다.

지하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적용이 강화되어 있다.

第2節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제17조 (第1種 場所) 別表 1의 第1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機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 以上(飲食店의 경우에는 33平方미터 以上) 인 것.
 - 나. 가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2에서 定하는 数量의 5分의 1 以上的 危險物,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準危險物,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ガス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ガス중 40킬로그램 以上的 可燃性ガ스를 貯藏・取扱하는 것.
 - 다. 가目 및 나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上인 것.

1종장소 :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시장・여관・호텔・여인숙・기술사・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 복지시설・유치원・공중목욕탕

1. 소화 기구의 경우 구법에는 건축물의 내화성과 타 소방설비와의 조건 등을 참조하여 설치개수를 감면하였으나 신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다.

2. 屋内消火栓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 가. 延面積 2천 100平方미터 以上(公演場・競技場・集会場의 경우에는 1천 500平方미터以上) 인 것.
- 나. 가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제2類 또는 제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 다. 가目 및 나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以上(公演場・競技場・集会場의 경우에는 300平方미터以上) 인 것.

2. 옥내 소화전의 설치 대상물이 내화구조인 경우 3배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을 신법에서는 조건없이 힘으로 비내화 건물을 완화이나 내화구조건물은 종전과 동일한 적용이다.

3. 스프링클러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 가. 公演場 또는 集会場으로서 舞臺部(舞臺에 附設裝置物室 및 소품실을 包含한다. 이하같다)의 바닥面積이 当該 舞臺部가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의 層에 있는 境遇에는 300平方미터以上, 其他의 層에 있는 境遇에는 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나. 市場으로서 販賣場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4層以下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9천平方미터 以上, 5層以上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6천平方미터以上인 것.
- 다. 가目 및 나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 라. 가目 대지 다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公演場・競技場・集会場 및 寄宿舎를 除外한다)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 10層以下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1천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마. 가目 대지 다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旅館・호텔 또는 旅人宿에 한한다)의 11層以上의 部分
- 바. 가目 대지 다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対象物(旅館・호텔 및 旅人宿을 除外한다)의 11層以上의 部分으로서 建築法施行令 第96條 第1項 第3号의 規定에 의하여 防火区劃된 以外의 部分의 바닥面積 介計가 100平方미터以上(그 層의 壁 및 반자의 室内에 面하는 部分의 마감을 準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200平方미터以上, 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500平方미터以上) 인 것.
- 3라. 항의 경우 구법에는 시장으로 면적 1000㎡이면 해당되었으나 삭제되었으며 여관・호텔・음식점・병원・등의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신법에서는 폭넓게 강화 되었다.
- 마. 마항의 여관・호텔의 경우 11층 건물이면 스프링클러 설비 해당

5. 물噴霧等 消火設備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対象物

- 가.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第2類・第4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 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 나. 消防對象物에 設置된 發電室 및 變電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4. 나항의 경우 보이라실이 배제되고 면적이 200㎡에서 300㎡로 됨. 해당되는 설비의 종류는 물분무 소화설비 · 포말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히로겐 화물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등이다.
5. 屋外消防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바닥面積(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1層인 경우에는 1層의 바닥面積을,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2層以上인 경우에는 1層 및 2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한다)이 9천平方미터이상인 建築物. 이 경우同一대지안에 耐火構造建築物 · 防火構造建築物 以外의 建築物이 2以上이 있는 경우에 当該 建築物의 外壁相互間의 中心線으로부터 水平距離가 1層에 있어서는 3미터以下, 2層에 있어서는 5미터 以下인 것은 이를 1個의 建築物로 본다.
6.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第 2 号 各目的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 5 号의 建築物
7.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市場 및 公衆沐浴場의 경우에는 1천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 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에서 定하는 수량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 取扱하는 것
다. 가目 및 나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 · 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300平方미터以上(市場 및 公衆沐浴場의 경우에는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라. 消防對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7. 公연장이나 식당인 경우 구별에서는 500㎡이나 内화구조인 경우 100㎡이므로 강화되었고 시장이나 공중 목욕탕의 경우에는 内화구조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8. 電氣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다음 各目的 消防對象物(耐火構造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 · 바닥 또는 반자의 全部 또는一部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材料에 철망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가. 延面積 3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契約電流容量(同一建築物에 契約種別이 다른 電氣가 供給되는 경우에는 그 중 最大契約電流容量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암페어를 超過하는 것.
8. 전기 화재경보기의 설치대상은 비내화구조의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9. 自動火災速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市場 · 旅館 · 호텔 · 여인숙 및 醫療院으로서 바닥面積 1천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10.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數가 3層以上 또는 収容人員이 800人以上(旅館 · 호텔 · 旅人宿 · 醫療院 · 老人福祉施設 · 兒童福祉施設 · 心神障礙者福祉施設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300人以上)인 것.

- 나. 비상벨 · 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収容人員이 100人以上(旅館 · 호텔 · 旅人宿 · 醫療院의 경우와 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以上)인 것.

10. 나항의 경우 50인을 100인으로 20인을 40인으로 완화
11. 避難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避難層 및 11層 以上의 層을 除外한 層(主要構造部를 耐火化構造로 한 建築物에 있어서는 2層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으로서 다음 각目的 것.
가. 醫療院 · 老人福祉施設 · 兒童福祉施設 · 心神障礙者福祉施設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20人以上인 것.
나. 旅館 · 호텔 · 旅人宿 및 寄宿舎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30人以上인 것.
다. 公演場 · 競技場 · 集会場 · 飲食店 · 유기장 및 市場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50人以上인 것.
11. 제외되는 층이 18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사실화 하였으며 수용 인원 산정도 그 배수로 하였다.
12. 人命救助裝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7層以上 観光호텔로서 収容人員이 200人以上인 것.
나.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5層以上인 病院으로서 収容人員이 200人以上인 것.
13. 避難口誘導燈 · 通路誘導燈 · 客席誘導燈 및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구 분 용도별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이상의 층	기타의 층
기숙사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유도표시
공연장 · 경기장 · 집회장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음식점 · 유기장 · 시장 · 여관 · 호텔 · 여인숙 · 의료원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심신장애자복지시설 · 유치원 · 공중목욕장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14. 消火用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基地面積이 2萬平方미터以上인 建築物로서, 그 바닥面積(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1層인 경우에는 1層의 바닥面積을,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2層以上인 경우에는 1층 및 2層의 바닥面積의 合計를 말한다)이 1萬 5千平方미터以上인 建築物. 이 경우同一 基地안에 2以上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 当該 建築物의 外壁相互間의 中心線으로부터 水平距離가 1層에 있어서는 3미터 以下, 2層에

- 있어서는 5 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 나. 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延面積(地下層을 제외한다)이 2만 5千平方미터 이상인 것.
14. 내화 건축물의 경우 1500m² 준내화 1000m² 비내화 500m²이던 것을 통일하여 1500m²로 함.
15. 排煙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公演場 또는 集会場으로서 舞臺部의 바닥面積이 200平方미터 이상인 것.
- 나. 飲食店 · 유기장 · 市場 · 旅館 · 호텔 또는 旅人宿으로서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바닥面積이 1천平方미터以上인 것.
16. 나항중 카바레 · 비어홀을 배제하여 주었다.
16. 連結送水管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地下層을 제외한 層수가 7層以上인 것. 다만, 屋内消火栓設備가 設置되고 바닥面積이 150平方미터이상로서 10層이하인 建築物은 제외한다.
- 나. 地下層을 제외한 層수가 5層以上인 것으로서 延面積 6千平方미터以上인 것.
16. 아케이트나 지하가 등이 삭제되었다.
17. 連結撤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地下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700平方미터以上인 것.
다만,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경우에는 다음 각目的部分의 바닥面積은 이를 当該 基準面積에서 제외한다.
가. 耐火構造의 壁 · 바닥 또는 自動閉鎖裝置를 한 甲種防火門 또는 乙種防火門으로 区劃된 부분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下인 部分
나. 浴室 · 변소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
다. 耐火構造의 壁 · 바닥 또는 自動閉鎖裝置를 한 甲種防火門으로 区劃된 部分에 位置하는 昇降機 및 換氣設備의 機械室 · 通信機器室 · 電子計算機器室 ·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로 使用되는 部分
라. 發電室 · 變圧室 其他 이와 類似한 電氣設備가 설치되어 있는 部分
마. 昇降機의 昇降路 · 린넨슈우트 · 파이프탁트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
바. 보일러室 其他 이와 類似한 設備가 設置된 部分
17. 연결살수해드의 설치가 면제 되는 장소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으로 사실상 완화 되었다.
18.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地下層을 제외한 層수가 11層以上인 것.

제18조(第2種場所) 別表 1의 第2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300平方미터以上(4層以上의 共同住宅 · 工場 · 映画 및 텔리비전 촬영소의 경우에는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2에서 定하는 数量의 5分의 1以上의 危險物,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準危險物, 別表 4에서

- 定하는 数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ガス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ガス中 40킬로그램 以上의 可燃ガス를 貯藏 · 取扱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 · 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이상인 것.
- 2종장소: 정거장 · 대합실 · 교회 · 사찰 · 아파트 · 학교 · 학예전시관 · 사업장(관광서 · 회사 · 은행 · 이발소 · 화장장 · 오물처리장) 공장 · 촬영소
- 구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2천 100平方미터以上(教会 · 寺刹의 경우에는 3千平方미터以上)인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 · 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别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 取扱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 · 無窓層 또는 4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 以上(教会 · 寺刹의 경우에는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 모든 건물을 내화 건물로 간주하여 면적을 정한 것으로 구법과 동일하다.
 -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别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 · 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别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 取扱하는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事業場에 한한다)의 地下層 · 無窓層 또는 4層以上 10層이하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1千 5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事業場, 映画 및 텔리비전 촬영소에 한한다) 11層以上의 部分으로서 建築法施行令 第96條 第1項 第3号의 規定에 의하여 防火区劃된 以外의 部分의 바닥面積合計가 100平方미터以上(그 層의 壁 및 반자의 室내에 면하는 部分의 마감을 準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200平方미터 以上, 不燃材料로 한 경우에는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 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장구성을 알기쉽게 작성 되었다.
 4.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第2号 각목에 揭記하는 消防對象物 또는 그 部分
나. 第17條 第5号의 基準에 該當하는 建築物
 5.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教会 · 寺刹 및 事業場의 경우에는 2千平方미터以上)인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别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别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 · 取扱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 以上인 것.
- 라. 消防對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 平方미터 以上인 것.
5. 이 경우에도 내화구조의 수치를 적용 하였으나 통신 기기실의 바닥면적 500m²는 그대로 둔 것은 위험율을 고려한 것 같다.
6. 電氣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다음 각목에 揭記하는 消防對象物(耐火構造建築物을 例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材料에 鉄網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가. 延面積 500平方미터以上(事業場의 경우에는 1千 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契約電流用量이 100암페어를 超過하는 것(4層以上의 共同住宅 및 事業場에 한한다)
7. 自動火災速報設備를 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工場, 映画 및 텔리비전촬영소로서 바닥面積이 1천 500平方 미터 以上인 것.
8.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1) 地下層을 例外한 層數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數가 3層以上인 것.
 (2) 学校·学芸展示館으로서 収容人員이 800人以上인 것.
 나.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収容人員이 100人 以上(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以上)인 것.
8. 가항의 경우에는 방송설비와 함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나항의 경우에는 3개설비중 1개를 설치하면 된다.
9. 避難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避難層 및 11層以上의 層을 例外한 層으로서 다음 각 목에 揭記하는 것.
 가. 4層以上의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30人 以上인 것.
 나. 정거장, 待合室, 教會, 寺刹 및 学芸展示館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50人 以上인 것.
 다. 学校, 工場, 映画 및 텔리비전촬영소 및 事業場의 경우에는 収容人員이 150人 以上(地下層·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100人以上)인 것.
10. 避難口誘導燈·通路誘導燈 및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11. 排煙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정거장·待合室로서 地下層 또는 無窓層의 바닥面積이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12. 물噴霧等消火設備, 屋外消火栓設備, 消火用水設備, 連結送水管設備, 連結撒水設備 및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4号, 第5号, 第14号, 第16号 내지 第18号의 規定을 각各準用한다.
 3종장소: 창고, 차고, 비행기 격납고
- 제19조(第3種場所) 別表 1의 第3種場所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機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2에서 定하는 数量의 5分의 1 以上의 危險物,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準危險物, 别表 4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圧ガス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圧ガス 중 40킬로그램以上的 可燃性ガス를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무창층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50平方미터 以上인 것.
2.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倉庫로서 延面積 2千1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 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别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倉庫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4層以上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450平方미터以上인 것.
2. 當고의 경우에는 절골트러스 건물인 경우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3 배의 완화효과를 보게 되었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屋内에 面하는 部分)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락크식倉庫(선반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을 設置하고, 昇降機에 의하여 수납물을 運搬하는 裝置를 갖춘 倉庫를 말한다)로서 延面積 2천100平方미터 以上인 것.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别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3. 락크식 當고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규정을 2100m²로 완화하였다.
4. 물噴霧等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車庫 또는 駐車場의 層(駐車한 諸車가 同時に 나올 수 있는 構造의 層을 例外한다)으로서 駐車의 用途에 使用되는 部分의 바닥面積이, 地下層 또는 2層以上의 層에 있어서는 200平方미터以上, 1層에 있어서는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용도별	구분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층	기타 층
교회, 사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학예전 시관, 정거장, 대합실, 공장, 영화 및 텔리비전 촬영소, 사업장	피난구유도등·통로 유도 표지 유도등		

- 나. 倉庫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1千倍以上 의 第1類·第2類·第4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1천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 다. 飛行機格納庫(泡消火設備에 한한다)
4. 구법과 동일하나 비행기 격납고에 소화설비로 포소화설비로 제한된 것이 특색이다.
5. 動力消防펌프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第2号各目的 消防對象物 또는 그部分
- 나. 第17條 第5号의 基準에 該當하는 建築物
6.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의 地下層·無窓層 또는 3層以上의 層으로서 그 바닥面積이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 라. 消防對象物의 通信機器室로서 그 바닥面積이 500平方미터以上인 것.
6. 内화, 비내화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1000㎡로 고정시켰다.
7. 電氣火災警報機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的 倉庫(耐火構造 建築物을 除外한다)로서 壁·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不燃材料나 準不燃材料가 아닌 鐵網을 넣어 만든 構造의 것.
8. 自動火災速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倉庫로서 그 바닥面積이 1千500平方미터以上인 것.
9.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地下層을 除外한 層數가 11層以上이거나 地下層의 層數가 3層以上인 것.
- 나.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収容人員이 100人以上인 것. 다만, 地下層 또는 無窓層이 있는 경우에는 40人以上인 것.
10. 避難口誘導燈·通路誘導燈은 地下層·無窓層 또는 11層以上의 層에, 誘導標識는 其他의 層에 設置하여야 한다.
11. 屋外消火栓設備·消火用水設備·連結送水管設備·連結撒水設備 및 非常콘센트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5号·第14号·第16号 내지 第18号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 제20조 (指定文化財)** 別表 1의 指定文化財에는 消火器具를 設置하고, 延面積이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에는 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구법에는 중요문화재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방지 설비가 해당되었으나 삭제됨.
- 제21조 (地下街)** 別表 1의 地下街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다음과 같다.

1. 消火器具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50平方미터以上인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2에서 定하는 数量의 5分의 1以上의 危險物,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準危險物,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以上의 特殊可燃物 또는 高壓ガス安全管理法에서 規定하는 高壓ガス 중 40킬로그램以上의 可燃性ガス를 貯藏·取扱하는 것.
2.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75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2. 구법에서는 500㎡로 내화인 경우 1000㎡까지 해당되나 신법에서는 600㎡로 고정시킨것은 오히려 강화된 느낌이다.
3.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1千倍以上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1千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4.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延面積 600平方미터以上인 것.
- 나.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別表 3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準危險物 또는 別表 4에서 定하는 数量의 500倍以上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것.
4. 대통령령 제9849(80. 4. 15)로 시행령 개정때 「귀하가」가 소방대상을 규정되었으나 자동화재 방지설비의 대상에서는 누락 되었었으며 본 신법에 600㎡로 정하게 되었다.
5. 非常警報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가.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 層數가 3層以上이거나 収容人員이 800人以上인 것.
- 나.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
가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消防對象物로서 収容人員이 40人以上인 것.
6. 避難口誘導燈 및 通路誘導燈은 모든 地下街에 設置하여야 한다.
7. 排煙設備·連結送水管設備·非常콘센트設備 및 無線通信補助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延面積 1千平方미터以上인 것.
8.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延面積 700平方미터以上인 것.
9. 電噴霧等 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관하여는 第17條 第4号의 規定을 準用한다.
- 제22조 (複合建築物)** 別表 1의 複合建築物(第15條 但書에 該當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消防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은 各用途別 該當數值을 第17條 내지 第19條

에 规定된 用途別 基準數値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以上인 것으로 한다. 다만, 誘導燈과 誘導標識의 競合하는 層에 있어서는 誘導燈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3節 消防施設의 免除등

제23조 (消防施設의 免除) ①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部分에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等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屋外消火栓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에 있어서는 1層 및 2層의 部分에 한한다)에는 屋内消火栓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비중 대치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1, 2층에 한함) 동력소방펌프·스프링클러·물분무

②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部分에 물噴霧等消火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스프링클러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스프링클러 : 물분무

④ 물噴霧等消火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車庫·駐車場이나 別表3의 第1類·第2類 또는 第5類의 準危險物이나 別表4의 特殊可燃物을 貯藏·取扱하는 消防對象物에 스프링클러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물噴霧等消火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고나 주차장 : 스프링클러(포밀소화설비)

⑥屋外消火栓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等消火設備 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屋外消火栓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동력소방펌프

⑧ 動力消防펌프 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部分에 屋内消火栓設備·屋外消火栓設備·스프링클러設備 또는 물噴霧等消火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動力消防펌프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 또는 그部分(内務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한다)에 스프링클러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消火設備(表示溫度가 셀씨 75度이하이고 作動時間이 60초이내의 閉鎖型 헤드를 設置한 것에 한한다)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自動火災探知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설비

⑪ 非常벨·自動式싸이렌 또는 放送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自動火災探知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그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非常벨 또는 自動式싸이렌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고, 放送設備 및 非常벨 또는 放送設備 및 自動式싸이렌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自動火災探知設備나, 非常벨 또는 自動式싸이렌과 同等以上의 音響을 발하는 裝置를 附設한 放送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그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非常벨이나 自動式싸이렌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비상벨·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⑬ 避難器具 또는 誘導標識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있어서 그 位置·構造 또는 設備의 狀況에 따라 避難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内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避難器具 또는 誘導標識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아직 内務부령으로 정한바 없으므로 구법에 배제규정을 적용한다.

⑮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送水口를 附設한 스프링클러設備나 물噴霧等消火設備를 内務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게 設置한 경우에는 当該設備의 有効範囲안의 部分에는 連結撒水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⑯ 연결살수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⑰ 排煙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의 部分에 排煙上 有効한 窓 其他의 開口部가 있을 경우에는 内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排煙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⑱ 배연상 유효한 개구부의 경우에도 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消防設備適用의 特例) ① 別表1의 第2種場所중 内務部令이 定하는 工場에 대하여는 第18條(消火設備에 한한다)에 대한 特例를 内務部令으로 定할 수 있다. ② 消防署長은 消防對象物의 位置·構造 및 設備의 狀況을 判断하여 消防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더라도 火災의 發生 및 燐燒의 우려가 頗著하게 적거나 火災로 인한 被害를 最小限度로 阻止할 수 있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第3章 第2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방법 시행규칙중 주요내용

제1조 (消防對象物의 檢查等) ① 消防法(以下 “法”이라 한다)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消防検査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建築物検査

消防法施行令(以下 “令”이라 한다) 別表1에 規定된 特殊場所의 構造·用途·消防施設·防炎処理物·其他火災予防 및 鎮压 対策에 必要한 事項의 檢查 건축물 검사시에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제2조 (消防検査等의 回数) ① 第1條의 規定에 依한 消防検査 또는 調査의 回数는 다음과 같다. 다만, 内務部長官이 따로 定하는 消防對象物에 对하여는 第1号의 建築物 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建築物検査는 年 1回

2. 危険物検査는 年 1回

3. 水利調査는 月 1回

4. 地理調査는 年 2回 以上

②同一構内에 2以上의 消防対象物이 있는 境遇와 하나의 建築物이 2以上의 用途로 使用되는 境遇에는 各消防対象物에 대한 建築物 檢査는 이를 同時に 實施하여야 한다.

③建築物検査와 危険物検査의 対象이 되는 消防対象物에 있어서는 建築物 檢査와 危険物検査를 同時に 實施하여야 한다.

④消防署長은 異常氣象時 또는 火災予防 및 領川對策上 必要한 때에는 檢査의 対象을 指定하여 第 1項의 檢査回数에 불구하고 수시로 消防検査를 實施할 수 있다. 건축물 조사는 년 2회에서 1회로 변경 되었고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었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조항을 삭제 하였다.

제 3조 (建築許可等의 同意) ①令 第 4條 第 1項 第 3号에 “危險物製造所等의 用途”라 함은 危險物製造所 · 一般取扱所 (危險物을 使用하여 製品을 生産 · 加工하기 為하여 危險物을 取扱하는 取扱所에 한한다). 屋內貯藏所 및 注油取扱所의 用途를 말한다.

②法 第 9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厅이 消防署長에게 建築許可등의 同意를 要請할 때에는 다음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建築主의 姓名 · 住所 (法人인 境遇에는 名稱 ·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그 代表者의 姓名)

2. 施工地

3. 工事의 種別 및 建築物의 用途

4. 許可年月日 (確認에 대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5. 着工予定日 및 竣工予定日 (許可에 对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6. 消防施設의 示方書 및 設計図書 (許可에 对한 同意인 境遇에 한한다)

구별의 조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 5조 (建築許可等의 同意要請) 法 第 9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厅이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建築許可等의 同意를 要請할 때에는 다음各項의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建築主의 住所 · 姓名 (法人인 경우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名稱 및 그 代表者의 姓名)

2. 施工地

3. 工事 種別 및 建築物의 用途

4. 許可年月日 (竣工 同意인 경우에 限한다.)

5. 着工予定日 및 竣工予定日

6. 消防施設의 시방서 및 設計図書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도로 소방본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消防施設의 施工申告) ①法 第32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申告는 別紙 第11号 書式에 依한다.

②第 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書에는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에 関한 示方書 및 設計図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③令 第27條 各号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에 있어서는 施工申告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는 소방설비업자의 의무지만 1차적으로 건축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제23조 (消防施設의 完工検査) ①法 第32條 第 2項의 規定에 依하여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의 完工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12号 書式에 依한 完工 檢查申請書를 消防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 第 4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確認에 对한 同意에 갈음하는 完工検査의 申請은 建築主가 할 수 있다.

②消防署長은 第 1項의 規定에 依한 完工検査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当該 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適合한지의 与否를 檢查하여야 한다.

③消防署長은 第 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查를 한 結果 当該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適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別紙 第13号 書式에 依한 完工 檢查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法 第 9條 第 4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確認에 对한 同意에 갈음하는 完工検査에 있어서 하나의 建築物에 数個의 消防施設을 하여 施工者가 2人以上인 境遇에는 각 施工者에게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하는 外에 建築主에게 각 消防施設에 对한 完工検査事項을 記載한 完工検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④消防署長은 第 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查結果 当該施設이 消防施設基準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補完 指示를 할 수 있다.

⑤令 第27條 各号의 規定에 依한 消防施設의 施工에 있어서는 完工検査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대로 금번 소방법 개정에는 대체적으로 설비적용만을 규정 하였을 뿐임으로 기술수준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까지는 신 · 구 소방법을 병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방법 적용에 애로가 많을 줄 안다.